

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26호의12서식] <신설 2025. 2. 18.>

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

구분	신규 인증 []	변경 인증 []
신청인	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 명칭	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 등록번호
	대표자명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전화번호	
	주소	
핵심 장치등	명칭	
	형식	
	인증번호(제원관리번호)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0조의8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18제3항 및 제40조의19제5항에 따라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를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직인

붙임 :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1부